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1조의2제1항, 제13조제2항, 제26조제1항,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	50	70	100
나.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2	40	70	100
다.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1호	250	350	500
라. 법 제12조제1항, 제18조 또는 제	법 제59조제3항	30	60	100

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제1호			
마.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3	50	70	100
바.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2호	250	350	500
사.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3호	250	350	500
아.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4호	250	350	500
자. 법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5호	250	350	500
차. 법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4	50	70	100
카.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·적재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5	50	70	100
타.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·적재 거부를 하지 않거나 발급·선적·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6호	250	350	500
파.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 제1호	150	200	300
하.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6	30	60	100
거. 법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 제2호	150	200	300

너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2호	50	70	100
더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3호	50	70	100
러. 법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2	50	70	100
머.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3	50	70	100
버.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4	50	70	100
서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4호	40	70	100
어.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5호	50	70	100